

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	7일
피상속인	상 호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사망일자		
	영업소 소재지	전 화 번 호		
	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	등 록 번 호		
상속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전 화 번 호		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첨부서류	신고인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합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. 1.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기업진단보고서 및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(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) 나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(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) 라. 대표자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) 3. 등록증 및 등록수첩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자기 소유인 경우: 건물 등기부등본 나.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. 임대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3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(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3호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